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8. 6.>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제품 개요	제품 종류	[]제재목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질바닥재 []집성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가공제품
	제품명(상품명)	제품번호(모델명)
	제품규격	판매단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 목재문화진흥회장 · 산림조합중앙회장 ·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목재제품 설명서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